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92 492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여성정책관실】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위원의 감독” 등 기존 시도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

【기업지원과】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조항의 근거법령을 현실과 맞게 정비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였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가 시군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
- 대풍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으로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조문 삭제

【환경과】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신규 현지성 사무를 시군에 위임함

【보건위생과】

-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폐지된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

【물 관리과】

-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였던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조치”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 조항에서 삭제

【농산지원과】

- 비료관리법, 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비료판매업의 등록” 등의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

【축 산 과】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내수면어업법 전문개정으로 기존에 시도 사무였던 “내수면어업의 면허” 등의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

【문화예술과】

【文 藝 术】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였던 “출판사 및 인쇄소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공연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

【지역개발과】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및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폐지된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일부 “도시개발사업”등의 현지성 사무를 위임조항에 추가함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

4. 의안전문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충북과학대학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여성정책관실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21호로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기업지원과	1	○ 전기사업자의 타인토지 등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제3항
	2	○ 10만V 미만으로서 전기수용설비 500KW 미만 및 발전용량 200KW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동법 제71조
	6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동법 제71조
	7	○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	동법 제89조제2항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과 소관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과	27	○ 토양오염 행정조치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조치명령 나. 토양오염 치거명령에 대한 청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동법 제26조의4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8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5호 내지 제32호·제47호·제48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33호 내지 제46호를 각각 제25호 내지 제38호로 하고, 제49호 내지 제53호를 각각 제39호 내지 제43호로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위생과	8	○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지정,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9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동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10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수리(마약류도매업자 제외)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11	○ 마약원료의 양도승인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12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13	○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
	14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동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15	○ 마약의 소매 보고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16	○ 마약취급자의 업무소 등 출입, 기록서류 검사 및 검사용 마약류 수거	동법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17	○ 폐기명령 등	동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18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마, 바, 아, 자)	동법 제43조
	19	○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동법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20	○ 청문	동법 제45조
	21	○ 과정금 부과(징수)처분	동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22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동법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23	○ 물수 마약류의 폐기·처분 등	동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물관리과 소관 제2호중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농산지원과 소관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호를 제1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를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농산지원과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의 교부	식물방역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2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농약판매업의 등록 나. 등록취소 등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 제25조
	3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호를 삭제하며, 제16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제15호 내지 제21호로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6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문화예술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호를 제6호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7호로 하고, 제11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6호로 하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역개발과	7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가림간판 규격의 설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17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립 바.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아.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4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65조 동법 제67조
	1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동법 제1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2조

별표 6의 권한위임사무중 제4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 증평출장소장,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u>지방공무원교육원장</u>,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종합본부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p> <p>.....<u>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u>.....</p> <p>.....</p> <p>.....</p> <p>.....</p> <p>.....</p> <p>.....</p>
<p>제2조(권한위임 사항)</p> <p>①~③ (생략)</p> <p>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u>지방공무원교육원장</u>,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종합본부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p>	<p>제2조(권한위임 사항)</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u>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u>,</p> <p>.....</p> <p>.....</p> <p>.....</p>
<p>제5조(위임처리 금지) 시장, 군수, 증평출장소장,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u>지방공무원교육원장</u>,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종합본부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p>	<p>제5조(위임처리 금지)</p> <p>.....<u>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u>,</p> <p>.....</p> <p>.....</p> <p>.....</p> <p>.....</p>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여 성 정책관실	1	○ 아동위원의 감독	아동복지법 제15조				
	2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동법 제16조				
	3	○ 아동의 후견인 선·해임 청구	동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4	○ 재단법인의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시설의 설치 인가 나. 시설의 폐지·휴지신고의 수리 다. 시설의 명칭·소재지 대표자 변경신고의 수리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삭 제>
기 업 지원과	1	○ 전기사업자의 타인토지 등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6조 제2항 제5항	기 업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법 제88조 제2항 제3항
	2	○ 10㎾미만으로서 전기수용 설비 500㎾미만 및 발전 용량 200㎾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42조		2	<현행과 같음>	동법 제71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4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과 같음>	
	7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42조		6	<현행과 같음>	동법 제71조
	8	○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	동법 제58조2 제2항		7	<현행과 같음>	동법 제99조 제2항
	9	○ 전기사업자, 손실을 받은 자의 재정신청의 처리	동법 제58조 제2항			<삭 제>	
	10~ 23	<생 략>			8~ 21	<현행과 같음>	
환경과	1~ 26	<생 략>		환경과	1~ 2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환경과	27	○ 토양오염유발시설관련 다음 사항 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 등 조치명령 및 사용증지 명령 다.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과 시설 및 비치자료의 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동법제12조 동법제13조	환경과	27	○ 토양오염 행정조치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조치명령 나. 토양오염 철거명령에 대한 청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동법제16조의4
	28~ 31	<생 략>			28~ 31	<현 행과 같음>	
보 건 위생과	1~7	<생 략>		보 건	1~7	<현 행과 같음>	
	8	○ 할정신성의약품의 도매 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 및 지정사항변경, 지정서 교부	할정신성의약품 관리법제8조, 제9조	보 건 위생과	8	○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변경지정, 지정서교부 및 내지 제12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0 조, 내지 제12조
	9	○ 할정신성의약품의 취급자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수리	동법시행규칙 제21조		9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면부 등재, 교부, 재교부(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제6조, 제5조	동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5조
	10	○ 할정신성의약품 취급허가,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업무의 정지	동법제35조		10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수리 (마약류도매업자 제외) 제6조, 제7조	동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11	○ 할정신성의약품 도매업 자의 판매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판매승인	동법제18조		11	○ 마약원료의 양도승인 동법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12	○ 할정신성의약품의 사전 보고의 수보	동법제27조및동법 시행규칙 제7조		12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동법제10조	동법시행령제7조
	13	○ 할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 살실자의 소지약품 신고 수리 및 양도의 승인	동법제28조		13	○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 사항 보고 동법제12조, 동법 시행규칙제23조	동법제12조, 동법 시행규칙제23조
	14	○ 할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보고명령, 검사 및 수거	동법제33조		14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신고 양도승인 동법제13조	동법시행규칙제13조
	15	○ 할정신성의약품 폐기명령 및 명령 불이행시 필요처분	동법제34조		15	○ 마약의 소매보고 동법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29조
	16	○ 할정신성의약품 갑시원의 임명	동법제36조		16	○ 마약취급자의 업무소 등 출입, 기록서류검사 및 검사용마약류 수거 동법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17	○ 할정신성의약품 원료사용 승인	동법제3조		17	○ 폐기명령 등 동법제42조	동법시행령제14조
	18	○ 마약취급자의 면허 및 면허 사항의 변경	마약법제7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 건 위생과	19	○ 마약취급자의 면허증 교부와 등록	동법제8조	보 건 위생과	18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마, 바, 아, 자)	동법 제43조
	20	○ 마약취급자의 면허증 등의 재교부	동법시행규칙 제5조		19	○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 정지 등)	동법제44조, 동법 시행규칙제43조
	21	○ 마약취급자의 등록 말소	동법제11조제1항		20	○ 철문	동법제45조
	22	○ 의료기관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동법제13조, 동법 시행령제1조		21	○ 과정금 부과(징수)처분	동법제46조 동법시행령제6조 동법시행규칙제44조
	23	○ 미약취급업무 폐지 등 신고의 수리	마약법제10조 제1항, 제2항		22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동법제50조 동법시행규칙제47조
	24	○ 마약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	동법제52조		23	○ 몰수 마약류의 폐기· 처분 등	동법제5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
	25	○ 마약취급자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등	동법제53조			<삭 제>	
	26	○ 마약취급자의 사고보고의 수보	동법제55조			<삭 제>	
	27	○ 마약취급자격상실자의 소지마약 신고수리 및 양도의 승인	동법제16조			<삭 제>	
	28	○ 적출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			<삭 제>	
	29	○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 및 지정서 교부	동규칙제4조			<삭 제>	
	30	○ 적출물처리계 획수립 및 처리설비보고의 수보	동규칙제8조			<삭 제>	
	31	○ 적출물처리업자의 휴업 재개업폐업명의변경 등 신고의 수리	동규칙제10조			<삭 제>	
	32	○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취소등 <생 략>	동규칙제13조			<삭 제>	
33~	46			24~	37	<현 행과 같음>	
	47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마약법제55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삭 제>	
	48	○ 항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의 교육	항정신성의약품 관리법제36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삭 제>	
49~	53	<생 략>		38~	42	<현 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물 관 리 과	1	<생 략>		물 관 리 과	1	<현행과 같음>	
	2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 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는 제외) 나.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 조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제2항 동법제7조, 동법 시행규칙제2조		2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 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는 제외) 나. <삭 제>	먹는물 관리법 제5조제2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농 산 지원과	1	○ 비료판매업의 등록	비료관리법제13조	농 산 지원과		<삭 제>	
	2	○ 사고비료의 양도 및 판매 승인신청 수리 처리	동법제17조, 동법 시행령제10조			<삭 제>	
	3	○ 비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동법제14조제2항			<삭 제>	
	4	○ 비료판매업 등록의 제한	동법제15조			<삭 제>	
	5	○ 비료판매업 등록 및 취소, 휴업, 폐업, 영업 재개시 등의 고시	동법시행령제7조			<삭 제>	
	6	○ 공동방제비용 부담명령서 교부	식물방제법제23조의3, 동법시행 규칙제34조		1	○ 방제비용 부담통지서의 교부	식물방제법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7	○ 비료판매업자의 휴업 및 폐업신고 수리	비료관리법제13조			<삭 제>	
	8	○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농약판매업 등록 나. 농약판매업의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의 수리 다. 영업정지 명령 및 등록취소	농약관리법제10조, 동법제10조제2항 시행규칙제12조의5		2	○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농약판매업의 등록 나. <삭 제> 다. 등록취소 등	농약관리법제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0조
	9	○ 방제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방제업의 등록 나. 방제업의 폐·휴업, 영업재개신고의 수리	동법제11조, 동법제11조제2항			<삭 제>	동법제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1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농 산 지 원 과	10	○ 농약판매업자와 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동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농 산 지 원 과	3	○ 농약 관리에 관한 보고	동법 제25조
	11 ~ 13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축산과	1 ~ 5	<생 략>		축산과	1 ~ 5	<현행과 같음>	
	6	○ 가축의 격리와 이동 제한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6	○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15	○ 내수면어업의 면허, 기간 연장 허가 및 시설제거 명령,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내수면어업기반축 진법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1 조, 제23조			<삭 제>	
	16 ~ 22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문화 예술과	1	○ 출판사 및 인쇄소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나. 등록증교부 및 정정 교부 다. 폐업신고의 수리 라. 등록취소 마. 간행물 납본 처리	출판사 및 인쇄 소의 등록에 관 한 법률 제3조 동법 제3조제2항				
	2	○ 종교의식용 피아노(전자 오르간 포함)의 면세용도 증명서 발급	동법 제5조제1항 18조제1항제16호			<삭 제>	
	3	○ 공연사등록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나.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다. 폐업 등 신고 수리 라. 등록취소	공연법 제3조 동법 제4조, 제5조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 역 개발과 1~5 6 7 8 9 10 11~ 19	<생 략>		지 역 개발과 1~5 6 7 8 9 10 11~ 16	<현행과 같음> <식 제> <식 제> <식 제> <현행과 같음> o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라. 가립간판 규격의 설정 마.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 차. 영업침지등에 관한 사항 카. 허가·신고·안전도검사 ·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생 략>	<현행과 같음> <식 제> <식 제> <식 제> 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77조제2항 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동법 제47조 제1항 o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동법 제76조의2 제2항 o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라. 가립간판 규격의 설정 마.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 차. 영업침지등에 관한 사항 카. 허가·신고·안전도검사 ·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77조제2항			
	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동법 제47조 제1항			
	o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동법 제76조의2 제2항			
	<생 략>				
	o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o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 등의 표시	동법 제3조		가. 가립간판 규격의 설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동법 제3조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라. 가립간판 규격의 설정	동법시행령 제19조제7항			
	마.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동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9조			
	바.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동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동법 제10조			
	이.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동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	동법 제13조			
	차. 영업침지등에 관한 사항	동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카. 허가·신고·안전도검사 ·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동법 제17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20조			
	<생 략>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 역 개발과		<신 설>		지 역 개발과	17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증 도시개발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 수리 바.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사. 광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이.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제4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6조 동법 제67조 동법 제67조
		<신 설>			18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동법제13조 동법제24조 동법제49조 동법제50조 동법제51조 동법제52조

【별표 6】

현 행 기 관		개 정 안	
일련 번호	단지별	수입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1~3	<생 략>		
4	대통지방산업단지	읍성군수	공업 배치 및 품 질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부록 제6호는 「현행기관」과 「개정안」에 대한 일련번호와 단지별로 표기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입기관은 표기되지 않았다. 「현행기관」과 「개정안」은 「현행기관」과 「개정안」에 대한 일련번호와 단지별로 표기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입기관은 표기되지 않았다.

【별표 7】

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부록 제7호는 「현행기관」과 「개정안」에 대한 일련번호와 단지별로 표기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입기관은 표기되지 않았다. 「현행기관」과 「개정안」은 「현행기관」과 「개정안」에 대한 일련번호와 단지별로 표기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입기관은 표기되지 않았다.

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부록 제7호는 「현행기관」과 「개정안」에 대한 일련번호와 단지별로 표기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입기관은 표기되지 않았다. 「현행기관」과 「개정안」은 「현행기관」과 「개정안」에 대한 일련번호와 단지별로 표기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입기관은 표기되지 않았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위원) ①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친권상설 선고등의 청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전기사업법>

- 제88조(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 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89조(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8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다른 사람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3.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5.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공급계획 또는 수급계획을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7.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10.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및 그 종사자
 11.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3.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14.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의 실시, 오염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②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구입서·판매서)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마약류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제13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제18조·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함께 있어서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재배지·약국·조제장소 기타 마약류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업무상황·기록서류·의약품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분량에 한하여 마약류 및 마약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폐기명령 등) ① 허가관청은 제16조·제18조·제2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또는 대마초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업무보고 등)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①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기질 우려가 있는 마약·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성분·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4. 기타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
 5.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연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과징금처분) ①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0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물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이 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4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 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먹는물 관리법>

- 제5조(먹는물의 수질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이상인 것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미만인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26조(비용부담) 시·도지사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33조(방제비용부담통지서의 교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등) ①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약관리법>

<附錄第198回>

제7조(등록의 취소등)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연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 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25조(농약관리에 관한 보고등) ①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 기관의 장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등) ①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을 명하거나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다른 지역의 가축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교통차단·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방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수산 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등록) ①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내지 6. 삭제

② 등록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등록청은 제1항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반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간행물의 납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가 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소설을 출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출판물 2부를 등록청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한 자에게는 납본필증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9조(공연장업의 등록) ① 공연장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류별 시설 기준을 갖추어 그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공연장의 양수등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 등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 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1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3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3조제2항,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4조(영업정지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7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 또는 안전도검사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⑦ 제10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 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 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안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④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그 지정·고시된 내용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고시한 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께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의 허가,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3.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5.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16.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0.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7.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차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제25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①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제66조까지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문)으로 갈음

제6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제1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협의 또는 승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께 있어서 그 내용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이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장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위임 등)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⑥ 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자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